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66
----------	-------

제출년월일 : 2004. 6. 10.

제출자 : 파주시장

☐ 제안이유

주민등록법의 개정(2004.3.22. 법률 제7201호)으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 가입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현행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만 마련되었던 보험·공제등의 가입근거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확대 시행하여 업무수행 중 인감 및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보험가입대상 공무원을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그 대직자로 정함(안 제2조).
- 나. 보험가입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직위포괄 계약방식으로 보험가입을 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 다.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를 보험가입 금액을 각각 최저 1억원이상으로 정함(안 제3조제2항).
- 라.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시 세출예산에서 지급토록 함(안 제4조).
- 마.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함(안 제5조).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하 “인감등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인감 및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 (보험의 가입) ①시장은 인감등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의 보험가입금액은 각각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제4조 (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등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인감등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등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시장은 인감등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별지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등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 공제등의 가입조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1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6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정이유

- 주민등록법의 개정(2004.3.22. 법률 제7201호)으로 주민등록업
무담당공무원의 보험 · 공제등의 가입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현행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만 마련되었던
보험 · 공제등의 가입근거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으로 확대 시행하여 업무수행중 인감 및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보험가입대상 공무원을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공
무원 및 그 대직자로 정함. (안 제2조)

- 나. 보험가입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직위포괄 계약방식으로 보험가입을 하도록 함. (안 제3조제1항)
- 다.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를 보험가입 금액을 각각 최저 1억원이상으로 정함. (안 제3조제2항)
- 라.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시 세출예산에서 지급토록 함. (안 제4조)
- 마.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함. (안 제5조)

3.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4. 3. 22일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가입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행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만 적용되었던 보험·공제 등의 가입대상을 주민등록담당공무원에게도 확대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변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인감담당공무원은 인간증명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근거하여 2003년부터 보험·공제 등에 가입해 오고 있으며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읍면동 각 1명)에 대해서는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보험·공제 가입을 해오고 있는 실정으로,

○ 금번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담당공무원과 인감담당 공무원 모두에게 보험 및 공제 가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임.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명을 파주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보험가입대상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보험가입대상자에 대한 계약방법 및 보험가입금액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시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안 5조에서는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특히 담당공무원의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도록 하였음.

○ 금번 조례개정에 따라 보험·공제에 가입하게 되는 공무원은 시청 5명과 각 읍·면·동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공무원 59명을 포함하여 총 64명이며, 보험료는 금년 기준으로 년 6,000천원(93,000원*64명)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참고적으로 2003년부터 시작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보험 및 공제가입 이후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추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사례가 없는 실정임.

-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조례표준안을 토대로 개정되어 조례안의 조문구성이나 조문내용 등 법령적합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동 조례개정으로 인감업무와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보험·공제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안정적인 보호 장치를 확보하게 되고 민원업무 담당에 따른 부담감을 해소하게 되어 민원업무처리에 따른 각종 사고의 예방은 물론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됨.

주 민 등 록 법

[일부개정 2004. 03. 22 법률 제7201호]

제20조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인 감 증 명 법 시 행 령

[일부개정 2002. 12. 31 대통령령 제17867호]

제20조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266
----------	-------------

제안년월일 : 2004년 6월 18일
제안자 :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김영기

1. 수정이유

- 동 개정조례안의 조문구성 및 조문내용의 명확성과 간결성을 위해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안 제3조제2항 조문중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의”를 삭제함.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항중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의”를 삭제한다.